

##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(디자인분야) 채용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,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2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

###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

채용분야	채용등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서	담당직무 내용
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디자인 분야	시간선택제 임기제 '나급'	1명	임용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(12.31.)까지	신청사건립 추진반	·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관련 디자인 분야 업무 전반

※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

### 2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(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및 종로구 인사규칙

### 3

## 응시자격 요건

### ○ 공통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- 연령 : 20세 이상

### ○ 직무분야 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응시자격요건
시간선택제 임기제 '나급' (디자인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

### ※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

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
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
## 4 보수 수준
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**하한액을 원칙**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함.

【임용등급별 연봉한계액(주 35시간 근무 기준)】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인원
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	67,100천원	44,711천원	1명

-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##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○ 응시원서 접수

- **접수기간** : 2022. 4. 20.(수) ~ 4. 22.(금), <3일간 근무시간 내 09:00~18:00>
- **접수방법**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등기)
  - ※ 대리접수 가능하며, 퀵서비스, 택배, 팩스,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.
  -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.
  - 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**접 수 처** : 종로구청 신청사건립추진반 시설팀

(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, 종로구청 12층 신청사건립추진반 시설팀 임기제채용시험 담당자 앞)
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'통상환증서'를 제출서류와 동봉(현금 불가)
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# 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접시험		면접합격자 발 표
	일 시	장 소	
2022. 4. 27.(수)	2022. 5. 2.(월) 14시(예정)	세미나실 (종로구청 임시청사 3층)	2022. 5. 4.(수)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- 합격자 발표 : 종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○ 2차시험(면접시험)

- 대 상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하며, 5개 분야 100점 만점(분야별 20점)  
(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)
-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
※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때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
○ 최종 합격자 발표 :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-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발생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## 6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별지서식 제1호) 1부.

- 응시수수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7,000원(종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)

-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(별지서식 제2호) 1부.

-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.

○ 자기소개서(별지서식 제3호) 1부.

○ 직무수행계획서(별지서식 제4호) 1부.

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별지서식 제5호) 1부.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서식 제6호) 1부.

○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.

○ 최종학력 졸업증명서,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.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원본) 1부.
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비상근직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서식 제7호)' 추가 제출

○ 자격증 사본 1통(해당자에 한함.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종로구 홈페이지(www.jongno.go.kr)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종로구청 신청사건립추진반 시설팀 권혁진 주무관(☎02-2148-4289)